■ 가구 및 건축물 용에 관한 용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

구 분	허용용도	불허용도
I-1(1)-1(7), 2(1)~2(3)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공동주택 중 기숙사	허용용도 외의 용도
I - 3, 4, 5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도시형 공장에 한함), 창고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공동주택 중 기숙사	허용용도 외의 용도
I - 7, 8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도시형 공장에 한함),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판매시설(당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허용용도 외의 용도
I - 9	공동주택 중 기숙사,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도시형 공장에 한함),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허용용도 외의 용도
I - 9~13	공동주택(기숙사에 한함),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판매시설(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과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동화 실천계획이 승인된 사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을 위주로 판매하는 건축물에 한함),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도시형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에 한함),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허용용도 외의 용도
I - 14(1) I - 14(2)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문화및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은 제외),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허용용도 외의 용도
II - 1~4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도시형공장, 지식산업센터에 한함), 창고시설, 판매시설(바닥면적합계 2천제곱미터 미만, 다만, 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동화실천계획이 승인된 사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을 위주로 판매하는 건축물은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포함),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에 한함),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공연장, 종교집회장, 사무소, 금융업소, 자동차영업소에 한함),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허용용도 외의 용도
II - 5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2호 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에 한함), 창고시설, 판매시설(바닥면적합계 2천제곱미터 미만, 다만, 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동화실천계획이 승인된 사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을 위주로 판매하는 건축물은 제외)	허용용도 외의 용도

구 분	허용용도	불허용도
III - 1~6, 8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에 한함), 위락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중 주유소,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방송통신시설, 관광유게시설	허용용도 외의 용도
III - 7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에 한함), 위락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방송통신시설, 관광유게시설	허용용도 외의 용도
IV - 1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직판장, 대형할인점,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공장(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식품공장),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소 제외),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관광유게시설	허용용도 외의 용도

구 분	지정용도	불허용도
V - 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공공 · 문화체육시설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V - 2,3,5 (주차장)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주차장 (단, 주차전용건축물 제외)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V - 4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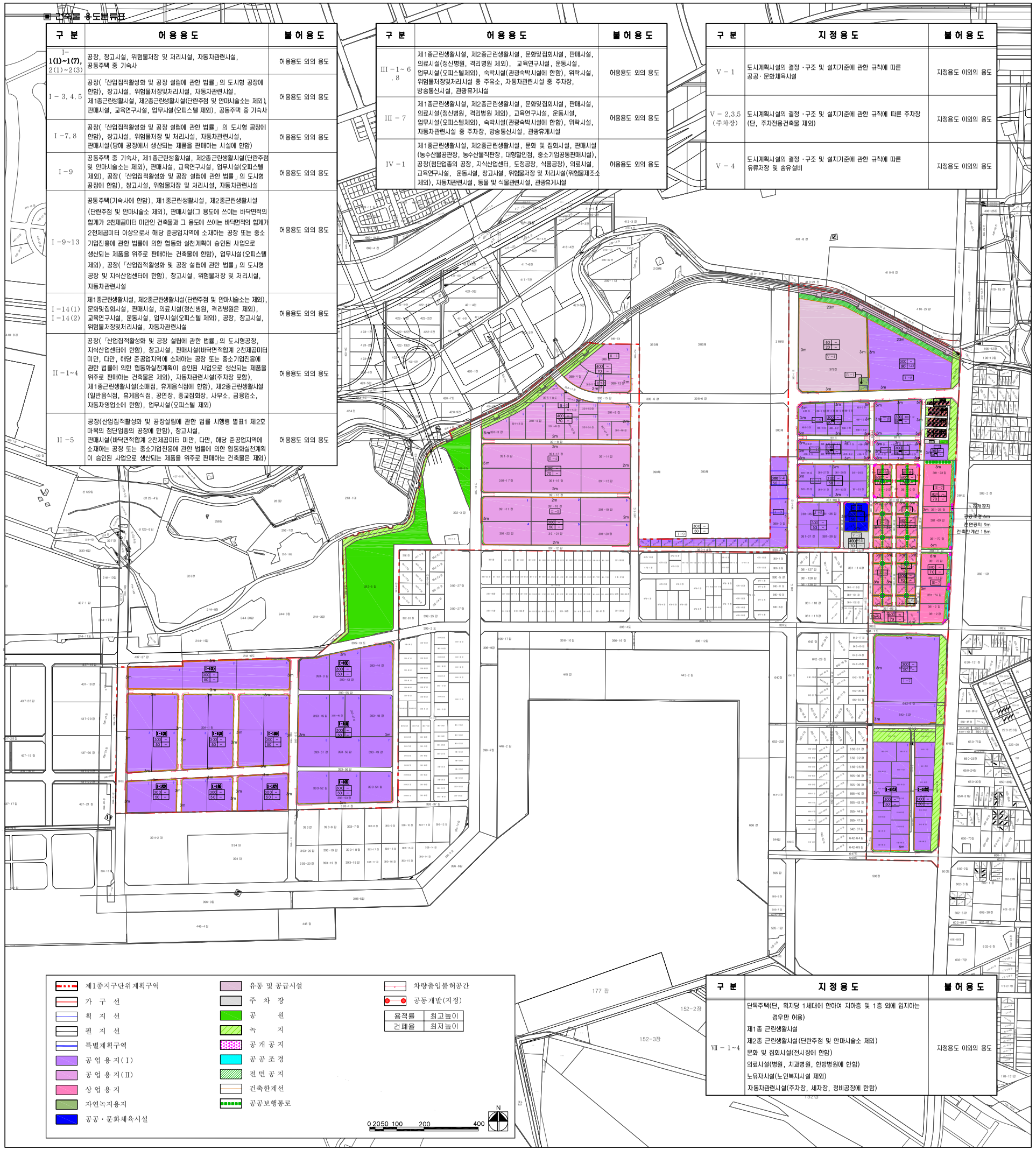

구 분	지정용도	불허용도
VII - 1~4	단독주택(단, 획지당 1세대에 한하여 지하층 및 1층 외에 임지하는 경우만 허용)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에 한함) 의료시설(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한함)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정비공장에 한함)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